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이건태 · 이재관
전용기 · 정준호 · 최혁진
박정현 · 이연희 · 염태영
복기왕 · 전현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안전부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(GRDP)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1%p 증가시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(8.33%), 평균 종사자수(2.10%) 및 사업체 수(1.39%) 등에 일정 수준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, 일부 지역의 경우 아동수당, 장려금, 포상금,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당 등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있음.

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

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4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65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대가의 지급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(대가의 지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